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3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김승원·이병진·이건태

임호선 · 이광희 · 이원택

서영교 • 박해철 • 권칠승

서삼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 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).

법률 제 호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"75세"를 각각 "70 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 략)	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
	같음)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7
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	
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	
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	
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	
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	
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	
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	3
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<u>75</u>	<u>70</u>
<u>세</u> 이상인 사람 1명. 이 경우	<u>세</u>
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	
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	
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	
며,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	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<u>.</u>
4. 제16조의3제1항의 6·25전몰	4
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	

람 중 선순위자로서 <u>75세</u> 이	<u>70</u> 4]
상인 사람. 이 경우 같은 순	
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	
항을 준용한다.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